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문화체육관광부 (영상콘텐츠산업과)
연 월 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추천기관을 명시함(안 제32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 협의 예정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법 제73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”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 1.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
 2.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률관련 단체
 3.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
 4. 「대한민국예술원법」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
 5. 법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
 6.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
 7.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
 8.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·단체가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

나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

다. 비영리민간단체

- ② 제1항에 따른 기관·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성별을 고려하여 3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2조의2(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의 선임) ① 「 <u>대한민국예술원 법</u> 」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회장 (이하 “대한민국예술원회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,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·선전물, 청소년, 법률, 교육, 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 형평 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 30명 이 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 여야 한다.	제32조의2(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의 선임) ① 법 제73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”란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 1.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 2.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률관 련 단체 3.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청 소년 관련 단체 4. 「대한민국예술원법」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 5. 법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 회 6.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31 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7.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8.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· 단체 가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영 화 및 비디오물 산업 진흥을 목 적으로 설립된 법인 나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언

< 신 설 >
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
따라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
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
호의 사항을 고려하여
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
위촉한다.
1. 추천 대상 분야의 적절한 분포
 2.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종사
경력
 3. 성(性) 및 연령의 균형. 이 경우
남성 또는 여성이 전체 위원
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
않아야 한다.

론의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을 목
적으로 설립된 법인
다. 비영리민간단체

- ② 제1항에 따른 기관·단체는 문화
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
경우에 성별을 고려하여 3인의
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화
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
야 한다.

③ (삭 제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436